

建築과 法, 그리고 그 運營

法과 制度는 國民이 지킬 수 있는 것이어야 하고,
行政은 論理와 現實의 調和를 이루어야 한다.

金基壽 / 本協會 常勤副會長

建築이란 그 生産過程에 있어서 設計者의 創作性·技術性·藝術性의 總合적 표현으로 이루어지는 조형예술의 한 분야이다.

훌륭한 建築物을 생산해 내는 데 있어 設計者는 지휘자의 역할을 하게 되는데 建築士法에 의해 탄생된 建築士로 하여금 건축법을 비롯한 주차장법, 주택건설촉진법, 도시계획법, 기타 많은 관법규와 지방자치단체의 條例 및 각시도의 행정처리 지침등 거미줄 같은 법률조항과 규제의 틀 안에서 건축생활활동을 하게 된다. 그래서 건축사는 상당한 법률 지식과 활동능력은 물론 建築主의 생각과 요구사항 그리고 감각적 능력까지 총동원하여 작품을 創出해야 하는 지극히 어려운 일들을 遂行해 나가지 않으면 안된다.

그러나 관계법규나 행정적 지침의 신축성·전문성과 제량성으로 인한 그 운영과 현실적인 적용의 어려움으로 공공성과의 마찰로 인한 다툼의 연속, 특히 토지의 희소성과 터무니 없이 높은 지가와 주택에 대한 소유욕망등의 이유로 건축민원이 두드러지게 많아 쉽게 해결하기 어려운 난제를 안고 있으며, 그러기에 소위 쓰기 좋은 말로 民官 양측면에서의 不條理가 성행하여 法의 논리적 保守性과 行政의 합리성 및 현실성이 마찰을 빚게 되는 것이다.

건축행정의 기본목적이 國民生活의 복리증진에 있다고 본다면 건축법과 건축사법이 건축물을 짓기 위한 諸規定과 建築主와 建築士간에 이루어지는 行爲가 이 법률로 인하여 위법을 방지함과 동시에 國民의 편익을 돕는 것이어야 하므로 쾌적한 국민생활 환경의 造成과 平安하고 편리한 생활공간의 이용을 極大化하면서도 資產的 가치도 또한 고려될 수 있도록 운영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建築主의 과도한 욕심으로 까다롭고 복잡한 規制에 위반되지 않는 建築物의 설계가 施工過程에서 위법사항이 발생하여 行政的 처벌의 審議대상이 되고 획일적 規制와 行政的 권위

또는 편견으로 인한 國民生活便益의 저해를 초래하고 있다.

국민의 社會的·文化的 수요나 욕구에 적응되지 않는 行政運營은 결코 發展의 의미에 있어 바람직스럽지 못할 뿐 아니라 앞서기는 國民生活의식을 啓導하거나 생활문화를 향상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國民이 지킬 수 없거나 지키는데 너무 어려움이 많다면 그 法은 國民을 위한 法이라 할 수 없을 것인즉 보다 많은 國民의 생활활동에 필요한 法이 바로 民主法이요 그러한 行政이 곧 民主行政이 아니겠는가.

國民이 원하는 최소한의 욕구에 대해서도 단력성 있는 법률이 필요한바 실효성 없는

建築行政은 결코 規制와 처벌위주가 아닌 文化行政次元으로 이끌어져야 하고 지금과 같은 算術計算式이고 規格的인 행정운영은 우리의 建築文化 발전에 하등의 도움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후손에게 文化的遺產을 넘겨줄 수가 없을 것이다.

제도를 國民에게 強要함으로써 무질서를 낳게 되는데, 그 例로써 현행 建築士法의 행정처벌 조항중 「不誠實」이나 「怠慢히」등의 用語가 윤리도덕적인 활동지침은 될 수 있을지언정 결코 行政的 처벌의 대상항목은 아닐 것이다.

法을 위반하는 경우를 불문하고 허위로 作成하여 사실을 숨기거나 不誠實하게 조사작성하여 建築行政에 지장을 가져오게 하는 등의 規制로 인하여 建築士에게 無限的 책임을 지우게 하는 것은 建築行政에 대한 소기의 目的을 達成하게 할 수 없을 것이다.

建築行政의 가장 대표적인 業務의 하나가 현재 施行중에 있는 調査 및 檢査代行業務이다. 이 업무는 本質的으로 行政業務로 建築物에 대한 調査 및

檢査業務를 建築士로 하여금 代行하게 하면서 처벌 및 行政處分의 規制만을 強化하고 있다.

그것은 公權의 확인업무로 建築物에 대한 調査와 檢査業務를 營業을 하는 建築士에게 委任처리하게 한 것으로써 公務員이 아니면 안되는 일인 調査 및 檢査시 하자가 발생할 경우 언제든지 해당사유를 적용, 建築行政 질서를 위한다는 명분하에 주로 建築士만을 처분토록 하고 있는 것이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 業務는 公務員이 과거에 관장해오던 事務를 不條理次元에서 建築士에게 인심종계 넘겨준 일인데 建築主로부터 보수를 받고 營業을 하는 建築士로 하여금 違法事項은 正 조치에 不應할 때 그 建築主를 해당관청에 報告하도록 한 制度는 商業主義의 측면을 떠나 서도 근본적으로 再檢討되어야 할 일이다.

建築行政은 결코 規制와 처벌위주가 아닌 文化行政次元으로 이끌어져야하고 지금과 같은 算術計算式이고 規格的인 행정운영은 우리의 建築文化 발전에 하등의 도움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후손에게 文化的遺產을 넘겨줄 수가 없을 것이다.

다시 말해서 變化가 다양하고 예술적 創作性으로 「디자인」해야만 資產的 가치와 쾌적한 환경등이 요구되는 建築關聯業務를 算術的이고 規格的인 「자」로 다스리려고 하는 것은 行政運營의 모순이고 이로 인하여 建築行政發展이 담보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急變하는 현대사회에의 복잡한 行政機能을 성과있게 遂行해 나가는 데는 많은 애로와 곤란이 따르겠지만 統制行政에서 開發行政의 단계를 거쳐 民主복지행정으로의 發展을 위해서는 公務員의 行態변화에 의한 文化的 次元의 建築行政 터전이 보다 굳건히 마련되지 않고서는 결코 建築文化의 꽃을 피우기에는 보다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建築士는 자신들의 자기성찰과 긍지를 높이고 주변의 不條理를 과감히 청산하는 자기혁신이 중요하다 할 것이다.